

## [사 건 명] 행심 2019 - 40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서면사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을  
취소한다.

###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 가. 2018.11.22. 점심시간, 학교운동장 축구골대에서 청구인이 같은 반  
학생 ■■■과 함께 축구공을 가지고 놀던 중, 피해학생이 다가와  
청구인과 친구가 갖고 놀던 축구공을 허락 없이 발로 찼.
- 나.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축구공을 찬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피해학생의  
머리를 잡고 서로 다투었으며,
- 다. 청구인의 친구 ■■■은 처음 다툼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싸움에 끼어들어 피해학생을 때림.

- 라. 2018.11.23. 피해학생측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 마. 2018.12.0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고 함.)를 개최하여, 청구인과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인 동시에 피해학생으로 판단하여
- 바. 2018.12.10. 청구인에게는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서면사과』 처분 조치함.
- 사. 2019.02.2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함.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 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학생이 놀이를 방해해서가 아니라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행한 욕설 및 비방적 언행에 있으며, 청구인은 3년간 피해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고, 이에 처음으로 청구인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며, 청구인은 명백한 피해자임.
- 나. 학폭위는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우발적 단순 싸움으로 보고 쌍방조치를 내렸으나,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피해학생보다 더 많은 가해학생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청구인측은 피해학생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를 하였으며, 전학을 준비하고 있음.
- 다. 2주간 담임교사로 재직하고 퇴직한 기간제교사가 피해학생의 학교성

활에 대한 진술서를 청구인 측에게 이메일로 보내왔으며, 내용을 보면 피해학생이 청구인 및 반 친구들에게 행한 불량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음.

라. 이 사건 이후 피해학생은 청구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숨기는 행위, 욕설과 비방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청구인은 충격을 받고 학교에 나가지 못해 결석처리 되었으며, 해당 반 학생들도 피해학생의 불량행위로 인하여 조퇴를 하거나 결석하는 일이 많아졌음.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일면만을 보고 피해학생을 피해자로 간주하여 조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피해를 입는 사실은 무시하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과중한 조치를 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하지 않고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았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폭위에서는 학생들의 폭력 발생 원인을 학생들 사이에 욕을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을 멀리 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판단하였고, 관련학생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CCTV를 확인해 보았으나 의심이 될 만한 모습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고 다툼의 원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피해학생이 허락받지 않고 공을 차버린 후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멱살을 잡아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았음.

나. 청구인은 학폭위 조치가 쌍방으로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결

과가 다른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폭위에서는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쌍방으로 다투었지만 ■■■ 학생이 가담하여 이루어진 폭력사안의 큰 그림을 보고, 청구인에 대해서만 2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그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을 더 조치한 것임.

다. 피청구인은 모든 자료를 학폭위 위원들에게 판단 자료로 제공하였고, 청구인 및 피해학생이 모두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기에 학폭위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어 학폭위 위원들은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지속성에 대한 판단 준거로 삼았음. 그리고 기간제교사의 진술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임.

라. 학폭위에서는 청구인과 피해학생 모두 학교폭력 심각성 보통(2점), 지속성 높음(3점), 고의성 낮음(1점),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보통(2점)으로 판단하여 총 10점으로 ‘6호 출석정지’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나 과한 처분이라 판단하고, 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 학생이 다툼에 가세하여 피해학생을 폭행)을 보고 청구인에게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로, 피해학생은 ‘1호 서면사과’ 조치로 경감하였음.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안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이나 부당성은 없으며,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CCTV 영상,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피해학생은 2018. 11. 22.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청구인과 ■■■이 추구하던 공을 발로 멀리 찼고,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싸움을 하였고, 옆에 있던 ■■■이 피해학생을 구타하였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 가. 학교 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이 2018. 11. 22. 점심시간에 피해학생과 싸우면서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에서는 심각성 보통(2점), 지속성 높은(3점), 고의성 낮음(1점), 반성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보통(2점)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총점 10점으로 6호 출석정지 조치에 해당하나, 청구인도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점 등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2호 조치와 3항 및 9항의 특별교육 처분으로 경감하였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먼저 청구인에게 욕설하여 도발한 점, 피해학생이 평

소 청구인을 폭행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점, 다른 학생들도 피해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이 사안에서 청구인이 피해학생과 싸우면서 서로 붙잡고 있는 사이에 ■■■이 주로 구타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한 면이 있다.

####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폭법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너무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감경하기로 하고, 제17조 제1항 제2호 처분과 제17조 제3항 및 제9항 처분을 취소한다.

### V. 결 론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